음식점 운영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점 운영]

음식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 걸친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음식점 운영을 위해 알고 있어야 할 법령정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콘텐츠에서는 음식점 운영에 대해 "운영 관리, 식품 관리, 점포 관리, 종업원 관리, 세금 납부 등, 영업의 변경 및 폐업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음식점 운영과 관련된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음식점 운영 1
1. 운영 관리 4
1.1. 운영 시 준수사항 4
1.1.1. 음식점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4
1.1.2. 청소년유해업소 영업자의 준수사항 8
1.2. 고객 관리 9
1.2.1. 고객과의 분쟁 해결 9
1.3. 모범업소 지정 및 지원 11
1.3.1. 모범업소 지정 11
1.3.2.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14
2. 식품 관리 16
2.1. 식품의 위생 관리 16
2.1.1. 식품 취급 및 판매 등의 준수사항 16
2.1.2. 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 18
2.1.3. 식품안심업소 지정 20
2.2. 원산지 표시 의무 23
2.2.1.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23
3. 점포 관리 27
3.1. 시설 관리 시 준수사항 27
3.1.1. 소방안전 등에 관한 관리 27
3.1.2. 금연구역의 지정 30
3.2. 임대차계약의 관리 33
3.2.1. 임대차계약의 갱신 33
3.2.2. 임대차계약의 종료 35
4. 종업원 관리 38
4.1. 종업원 채용 38
4.1.1. 근로 계약 및 채용 38
4.1.2. 4대보험 가입 41
4.2. 종업원의 위생 관리 43
4.2.1. 건강진단 43
4.2.2. 식품위생교육 44
5. 세금 납부 등 48
5.1. 세금의 납부 등 48
5.1.1. 부가가치세의 납부 48
5.1.2. 종합소득세의 납부 50
5.1.3. 현금영수증의 발급 53
6. 영업의 변경 및 폐업 등 57
6.1. 영업 사항의 변경 57
6.1.1.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 57
6.1.2.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및 말소 등 60
6.2. 휴업 및 폐업 62
6.2.1. 휴업신고 62
6.2.2. 폐업신고 62

1. 운영 관리

1.1. 운영 시 준수사항

1.1.1. 음식점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음식점 영업"이란 식품접객업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음식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 이 콘텐츠에서 다루는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의 식품접객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점포를 말합니다.

※ 음식점 영업의 종류 및 그 범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음식점 창업』 <사전 준비-음식점 창업 결정-업종 선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업의 질서 유지 등의 의무



영업의 제한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자 중 식품접객영업자 및 그 종업원에 대해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43조제1항).

▪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한 제한사항은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이하 "시·군"이라 함)의 조례로 정하며, 시·군의 조례로 영업을 제한하는 경우 영업시간의 제한은 1일당 8시간 이내로 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3조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8조).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영업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95조제3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영업 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①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②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③ 영업소 폐쇄(신고한 영업만 해당)를 명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2호).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음식점 영업자 및 종업원의 준수사항

▪ 음식점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해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7호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 축산물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운반·보관·진열·판매하거나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말 것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야생생물을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거나 판매하지 말 것
-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할 것(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水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나머지 업소에 대한 검사 갈음 가능)
- 식품에 대한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 등을 제조·가공·판매·수입·사용 및 운반하지 말 것
- 식중독 발생 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은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해서는 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해야 하며,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지 말 것
-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지 말 것
- 그 밖에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에서 정하는 사항

위반 시 제재

▪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6호 본문).

▪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식품위생법」 제101조제4항제3호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 음식점 영업자가 조리사면허증 보관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유흥주점영업자가 종업원명부 비치·기록 및 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준수사항(「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①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②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③ 영업소 폐쇄(신고한 영업만 해당)를 명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3호).

※ **가격 표시 방법**

Q. 고기를 판매하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격은 고기의 종류별로만 표시하면 되는 건가요?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표시해야 되나요?

A.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음식물의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최종 가격으로 표시해야 해요. 그리고 영업장 면적이 150 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영업소의 외부와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해야 해요(「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아목).

그리고 가격표에는 불고기, 갈비 등 식육의 가격을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해야 하며,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리하기 이전의 중량을 표시할 수 있어요. 100그램당 가격과 함께 1인분의 가격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예와 같이 1인분의 중량과 가격을 함께 표시하여야 해요(「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터목).

예) 불고기 100그램 OO원(1인분 120그램 △△원), 갈비 100그램 OO원(1인분 150그램 △△원)

영업자 등의 금지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함)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

-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행위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란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 “청소년고용금지업소”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3)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

1.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2.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①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②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③ 영업소 폐쇄(신고한 영업만 해당)를 명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3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되, 아래 1. 또는 2.에 해당하는 영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단서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제3항·제4항).

1.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2.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3.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 및 알선 금지

▪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음식점 영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장소는 제외)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가수, 악사, 댄서, 무용수 등이 하는 행위는 제외)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해서는 안 됩니다(「식품위생법」 제44조제3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8조제1호).

유흥종사자 고용·알선 및 호객행위 금지

▪ 위에 따른 음식점 영업자는 유흥종사자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식품위생법」 제44조제4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유흥종사자 고용·알선·호객행위 금지(「식품위생법」 제44조제4항)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①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②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③ 영업소 폐쇄(신고한 영업만 해당)를 명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3호).

풍속영업영위자의 준수사항

단란·유흥주점업자 등의 준수사항

▪ 풍속영업을 하는 자(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고 풍속영업을 하는 자를 포함. 이하 “풍속영업자”라 함) 및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종사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이하 “풍속영업소”라 함)에서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매매알선 등 행위
2.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3. 음란한 문서·도화(圖畵)·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한 다음의 행위
   가. 반포(頒布)·판매·대여하거나 이를 하게 하는 행위
   나.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
   다. 반포·판매·대여·관람·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4.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射倖)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 위 1.을 위반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위 2.부터 4.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행위를 하게 하는 등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1.1.2. 청소년유해업소 영업자의 준수사항

청소년 유해업소의 의미

청소년유해업소란?

▪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를 말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전단).

1.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유흥주점영업 및 단란주점영업(「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2. 청소년고용금지업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3)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
   ①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②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 ※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을 말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

청소년유해업소의 고용 및 출입 제한

청소년 고용금지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 되며,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1항).

청소년 출입 제한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2항).

▹ 청소년이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을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과 친권자 등의 관계를 확인하여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하게 할 수 있지만, 단란주점영업소 및 유흥주점영업소는 친권자가 동반한 경우에도 출입할 수 없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5항,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청소년유해업소의 나이 확인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나이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표 제시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업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4항).

위반 시 제재

▪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8조제4호).

▪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8호).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표시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의 표시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는 해당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방법으로 청소년의 출입·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지를 부착해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6항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8조).

위반 시 제재

▪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9호).

> ※ 청소년유해업소 및 유해행위 등 청소년과 관련된 유해환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청소년유해환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고객 관리

1.2.1. 고객과의 분쟁 해결

분실물에 대한 책임

손해배상 책임

▪ 음식점 영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151조 및 제152조제1항).

▪ 음식점 영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않은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152조제2항).

▪ 고객의 휴대물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음식점 영업자는 위의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상법」 제152조제3항).

고가물에 대한 책임

▪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高價物)에 대해서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價額)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않으면 음식점 영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상법」 제153조).

책임의 소멸시효

▪ 손해배상 책임(「상법」 제152조)과 고가물에 대한 책임(「상법」 제153조)은 음식점 영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고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상법」 제154조제1항).

▪ 물건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기간은 고객이 그 시설에서 퇴거한 날부터 기산합니다(「상법」 제154조제2항).

▪ 소멸시효는 음식점 영업자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상법」 제154조제3항).

음식점에서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위해식품의 판매에 따른 처벌

▪ 음식점에서 만든 음식을 먹고 식중독 등에 걸린 경우, 해당 음식물이 인체에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음식물에 해당하면 위해식품 판매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 오징어가 곰팡이가 피거나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등의 이유로 반품되어 상품가치가 전혀 없는 폐기대상이 되는 것들이고 실제로 그 일부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는 상태였음이 명백한 이상, 비록 그 오징어 전량이 이미 조리판매되어 얼마나 불결한 상태였는지 객관적인 확인이 불가능하고 이를 물로 씻은 후 불에 조리하여 만든 음식을 취식한 사람들에게서 인체의 건강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오징어는 곰팡이가 피고 변질되는 등 불결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도7294 판결 참조).

▪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94조제1항제1호).

▪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의무 위반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4조제2항).

조리사에 대한 처벌

▪ 조리사가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면허가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80조제1항제3호).

음식점 이용 관련 분쟁 해결

소비자피해구제기구를 통한 분쟁 해결

▪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정보센터, 소비자보호센터, 소비생활센터 등의 소비자피해구제기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1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7조).

▪ 소비자는 음식점을 이용하면서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전화·팩스·우편, 방문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분쟁 해결

▪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음식점 이용에 따른 피해에 대한 상담 및 합의권고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33조 및 제35조).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

▪ 음식점을 이용하면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 대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상대방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 ※ 음식점 운영과 관련하여 소비자 등과 발생하는 분쟁 해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소비자분쟁해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 모범업소 지정 및 지원

1.3.1. 모범업소 지정

모범업소의 지정

지정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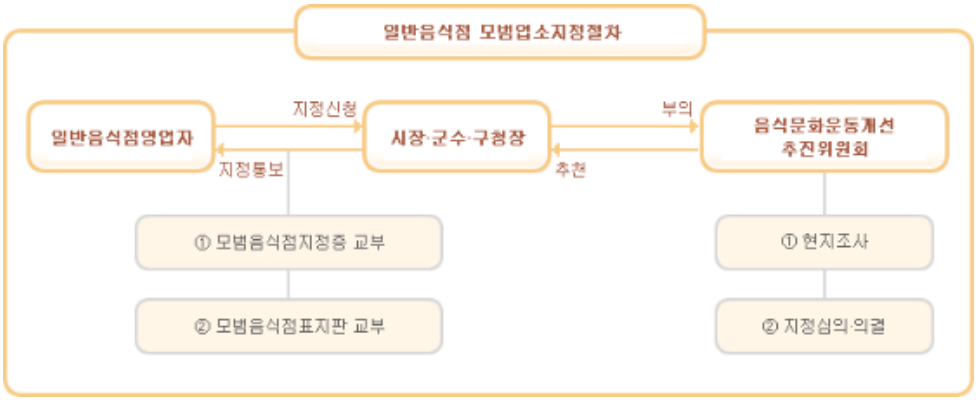
▪ ´모범업소 지정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일반음식점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모범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47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

> ※ 모범업소 지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9 제2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 업소

▪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될 수 있는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업소로 합니다(「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2조).

모범업소 지정 절차



지정 신청

▪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소의 영업자는 모범음식점 지정신청서(「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1조제1항).

심의·의결

▪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15일 이내에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이송해야 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및 시·군·구의 담당공무원과 함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매분기 단위로 현지 조사한 후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해야 합니다(「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1조제2항).

▪ 심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9 제2호,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표 1과 별표 4의 지정기준에 따라야 하며, 지정기준 외에 고객의 평판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경우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고용하여 위생적으로 운영하는 업소를 우선적으로 지정 추천합니다(「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1조제3항).

√ 위원회는 심의 시 위의 지정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 외의 다른 사유로 특정업소가 배제되지 않도록 공정을 기해야 하며, 동업자 단체 가입 여부 등에 따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1조제4항).

지정 여부 결정

▪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추천·통보해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위원장 및 영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1조제5항 전단).

지정증 및 표지판의 교부

▪ 시장·군수·구청장은 모범업소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모범업소 지정증(「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과 모범업소 표지판(「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표 3)을 교부해야 합니다(「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1조제5항 전단).

▪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에게 표지판 제작에 따른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 됩니다(「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1조제5항 후단).

표지판 및 지정증의 관리

모범업소 표지판 부착

▪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은 업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한 모범업소 표지판을 업소에 부착해야 합니다(「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1조제6항).

지정증의 재교부

▪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는 단순히 업소의 명칭이나 상호가 변경되거나 영업자가 모범업소 지정 특례(「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증의 재교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7조제1항).

▪ 지정증의 재교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게 한 후 지정증을 재교부해야 합니다(「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7조제2항).

모범업소 지정 재심사

지정 재심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모범업소에 대해 매년 10월에 정기적으로 모범업소 지정의 적합여부를 재심사해야 합니다. 다만, 재심사일을 기준으로 모범업소 지정을 받은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5조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모범업소가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시로 적합여부를 재심사할 수 있습니다(「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5조제2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모범업소가 다음에 해당하게 될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지정을 재심사해야 합니다(「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5조제3항).

- 영업자가 변경되었을 때(「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때
- 주 취급음식이 변경되었을 때

모범업소 지정의 특례

▪ 모범업소 지정업소 영업자가 1명에서 공동명의자로 변경되거나, 공동명의자 중 일부가 변경되더라도 당초 지정 당시의 영업자가 공동명의자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모범업소 지정업소로 봅니다(「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8조제1항).

모범업소 지정 취소

취소 사유

▪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다음에 해당하게 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이 취소됩니다(「식품위생법」 제47조제3항 및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6조제1항).

- 재심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 해당 시·군·구 관할지역 외로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

취소에 따른 조치

▪ 시장·군수·구청장은 모범업소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제4항).

- 모범업소 지정증의 회수
- 모범업소 표지판의 회수
- 그 밖에 해당 업소에 대한 모범업소 지정에 따른 지원의 중지

지정증 등의 반납

▪ 지정이 취소된 모범업소의 영업자 또는 운영자는 그 지정증 및 표지판을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제5항).

1.3.2.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검사 등의 면제

▪ 모범업소로 지정된 일반음식점의 영업자 또는 운영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모범업소로 지정된 날부터 2년 동안은 출입·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47조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제3항).

-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 시설개수명령을 받은 경우
-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융자 및 사업의 우선 지원

▪ 모범업소로 지정된 일반음식점은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과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에 대해 우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47조제2항).

안내홍보책자 발간·배부

▪ 다음의 안내홍보책자의 발간·배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2조제1항제2호).

- 내용: 모범업소의 위치, 메뉴, 가격, 전화번호, 교통편 등 (영어, 일어, 한자 병기)
- 배부: 관광호텔, 관광안내소, 주요기업 홍보실, 관공서 등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교부

▪ 모범업소로 지정된 일반음식점은 다음의 모범업소 표지판을 해당 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붙일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2조제1항제4호 및 별표 3).

1. 규격 및 재질

√ 규격 : 가로330㎜ × 세로430㎜

√ 재질 및 인쇄 : 10㎜ 투명아크릴판, 실사이미지 UV코팅

※ 조명장치를 위한 광원, 코팅, 발수보호캡 장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모범업소 표지판 도안



그 밖의 지원시책

▪ 그 밖에 다음의 사항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2조제1항제6호).

지원기관	지원내용
시·군·구	1. 상·하수도료 및 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 2. 공동찬통, 소형·복합찬기 구입비 지원 3.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설비자금 융자 4. 쓰레기봉투 구입비 지원 5.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우선지원
중앙부처, 시·도, 시·군·구	유관업소 포상 시 우선적으로 고려
한국외식업중앙회	1. 모범업소 관련 책자발간 배포 등 2. 정기간행물에 모범업소 지정업소 게재

2. 식품 관리

2.1. 식품의 위생 관리

2.1.1. 식품 취급 및 판매 등의 준수사항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의무

식품 등의 취급

▪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조제1항).

▪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조제2항).

> ※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 등"이라 함)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3조제3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

위반 시 제재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않게 영업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71조제1항).

▪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식품위생법」 제101조제2항제1호).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대한 금지의무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식품위생법」 제4조).

-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
-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식품위생법」에 따른 안전성 심사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않았거나 안전성 심사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것
-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 누구든지 다음의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물이나 그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뼈·젖·장기 또는 혈액을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식품위생법」 제5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라 도축이 금지되는 가축전염병

▹ 리스테리아병, 살모넬라병, 파스튜렐라병 및 선모충증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식품위생법」 제6조).

1.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행위
2. 위 1.에 따른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94조제1항제1호).

▪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의무 위반에 따라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4조제2항).

▹ 이 경우 그 해당 식품을 판매하였을 때에는 그 판매금액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병과됩니다(「식품위생법」 제94조제3항).

유독기구 등의 사용 금지 의무

유독기구 등의 사용 금지

▪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접촉되어 이에 유해한 영향을 줌으로써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영업상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8조).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94조제1항제2호).

▪ 유독기구 등을 사용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유독기구 등을 판매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4조제2항).

> ※ **식품 취급 및 판매 등의 준수사항 위반 시 제재**
>
> 폐기처분 등
>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위의 식품 취급 및 판매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 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를 하도록 명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72조제1항).

위해식품 등의 공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위의 식품 취급 및 판매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3조제1항제1호).

허가취소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대한 금지 의무(「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유독기구 등의 사용 금지 의무(「식품위생법」 제8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①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②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③ 영업소 폐쇄(신고한 영업만 해당함)를 명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호).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그가 해당 식품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허가 및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

√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식품위생법」 제5조),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식품위생법」 제6조) 또는 유독기구 등의 판매·사용 금지(「식품위생법」 제8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허가 및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

2.1.2. 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

쓰레기의 처리

쓰레기란?

▪ “쓰레기”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하며,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주로 생활폐기물에 해당합니다.

생활폐기물이란?

▪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로서,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 및 제1호).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 본문).

생활폐기물의 처리 수수료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 전단).

▪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 후단).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준수사항

▪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다류(茶類)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함]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사업장 규모(200제곱미터 이상에 한정함) 또는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중 일부 제외 대상 업종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름]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해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제2호).

>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3항).

-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신고한 자에 한정함)

▪ 위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제1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경우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8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5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7조의4).

>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따른 음식물의 처리**
>
> Q.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 A.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위탁처리해야 하는 음식점이 아니면, 종량제 봉투 등을 이용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면 돼요(「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3항 및 제14조제6항 참조).
>
> 최근에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제도를 “RFID 기반 음식물 쓰레기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며, 장비에 RFID태그를 인식하거나 배출하면 배출자와 배출된 음식물쓰레기의 무게정보가 중앙시스템에 자동 전송되어 수수료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에요.
>
> RFID 방식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계량방식에 따라 개별계량, 차량수거, 휴대형리더기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음식점에는 주로 차량수거방식과 휴대형리더기 방식이 이용된답니다.
>
> <출처: U 도시생활폐기물 통합관리서비스(www.citywaste.or.kr) 참조>

※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 등에 관한 고시」 및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citywast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3. 식품안심업소 지정

위생등급의 지정 절차

지정 대상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신청을 받아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위생등급을 지정할 수 있으며,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식품접객업소를 "식품안심업소"라고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7조의2제1항 및 「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2조제8호).

▪ 식품안심업소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라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은 업소입니다(「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3조).

지정 신청 및 평가

▪ 위생등급 지정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위생등급 지정신청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3서식)에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제1항 및 「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7조제1항·제2조제1호).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위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식품접객업소등 위생상태 평가항목·기준(「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표 1)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7조제2항).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위에 따른 평가 결과 중 기본 분야의 일부 사항이 미흡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완 또는 개선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을 요청한 기한까지 보완을 이행하지 않으면 기본분야의 평가결과를 부적합 처리할 수 있습니다(「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7조제5항 전단).

※ 이 경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필요시 기본분야 보완사항 확인을 위해 현장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7조제5항 후단).

위생등급 지정서 및 표지판 발급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기준에 충족된 경우 위생등급을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위생등급 지정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4서식)를 발급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제2항 및 「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7조제3항).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지정서를 발급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식품안심업소 표지판(「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표 2)을 제작·발급해야 합니다(「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7조제4항).

위생등급 지정 표시

▪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식품접객영업자는 그 위생등급을 표시해야 하며, 광고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47조의2제4항).

▪ 위생등급을 표시할 때에는 위생등급 표지판을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 또는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제4항).

위생등급 지정 결과 공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위생등급 지정 결과를 공표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47조의2제3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제3항).

지정 유효기간

유효기간

▪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은 위생등급을 지정한 날부터 3년으로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7조의2제5항 본문).

유효기간의 연장

▪ 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5서식)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7조의2제5항 단서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의3제1항).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식품안심업소의 지정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60일 전부터 식품접객업소등 위생상태 평가항목·기준(「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표 1)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식품안심업소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에 따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7조제2항 및 제6항 본문).

※ 다만,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7조제6항 단서).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유효기간 연장을 하는 경우 위생등급을 지정하고, 위생등급 지정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4서식)를 발급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의3제2항 및 「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7조제3항).

지정사항 변경 및 지정 취소 등

지정사항의 변경

▪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식품안심업소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를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7조의3제1항).

1. 지정업소의 영업의 형태(한식, 일식, 중식 등 주요 판매식품)
2. 영업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지정업소의 업소명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위 1. 및 2.에 해당하는 경우 식품접객업소등 위생상태 평가항목·기준(「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표 1)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7조의3제2항).

지정 취소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식품안심업소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47조의2제6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의3제3항 및 「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1조제2항).

1.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받은 후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식품안심업소로 허위 표시·광고하는 경우
3. 「식품위생법」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4.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안심업소를 지정받은 경우

지정서 및 표지판 반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급된 위생등급 지정서 및 식품안심업소 표지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하며, 영업자가 반납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0조 본문 및 제2조제7호).

- 식품안심업소 중 영업을 폐업하는 경우
- 영업자가 지정서 자진 반납을 원하는 경우
- 위생등급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 위생등급 유효기한이 종료된 경우

▪ 다만, 영업자 스스로 폐기하는 경우 폐기처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의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0조 단서).

식품안심업소에 대한 지원

기술적 지원

▪ 위생등급 지정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식품접객영업자는 다음에 따른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47조의2제7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의3제4항).

1.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교육
2. 위생등급 지정 등에 필요한 검사

검사 등의 면제

▪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식품접객업소는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을 2년 동안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47조의2제8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의3제5항).

융자 및 위생등급 지정 사업 우선 지원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진흥기금을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과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우선 지원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47조의2제9항 및 「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2조).

1. 방역, 포충등 및 청소비 등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2. 물티슈, 손소독제, 쓰레기봉투, 앞치마, 위생복 및 행주 등 위생용품에 관한 사항
3. 사전컨설팅 비용 등 식품안심업소 지정 평가에 관한 사항
4. 손소독기, 방충·방서시설, 영업장, 조리장, 창고 및 간판 등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통찬통, 소형·복합찬기 및 영문 메뉴판 등 음식문화개선에 관한 사항
6. 상하수도요금 및 지하수 수질 검사비 등 부대비용에 관한 사항
7. 광고, 안내책자, 공중파 및 SNS 등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 도지사 또는 시군구 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식품안심업소 지정 신청 및 지원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https://www.haccp.or.kr/ihrh/)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 원산지 표시 의무

2.2.1.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원산지의 표시

원산지 표시대상

▪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또는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포함함)를 표시해야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본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5항 및 제4조).

1. 다음의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배달을 통한 판매·제공을 포함)하는 경우

1) 쇠고기(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포함)
2) 돼지고기(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포함)
3) 닭고기(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포함)
4) 오리고기(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포함)
5) 양고기(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포함)
6) 염소(유산양을 포함)고기(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을 포함)
7) 밥, 죽, 누룽지에 사용하는 쌀(쌀가공품, 찹쌀, 현미 및 찐쌀 포함)
8) 배추김치(배추김치가공품 포함)의 원료인 배추(얼갈이배추, 봄동배추 포함)와 고춧가루

9) 두부류(가공두부, 유바 제외), 콩비지, 콩국수에 사용하는 콩(콩가공품 포함)

10)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및 부세(해당 수산물가공품 포함)

11) 조리하여 판매·제공하기 위해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

2. 1.에 따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경우

▪ 다만, 원산지인증 표시를 한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며, 쇠고기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를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단서).

> ※ 식품의 유형별 관리 및 보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식품소비자 보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는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봅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경우
- 우수관리인증의 표시, 품질인증품의 표시 또는 우수천일염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 천일염생산방식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 친환경천일염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경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에 따라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원산지인증 표시를 한 경우
-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입 농수산물이나 수출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또는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원산지의 표시기준 및 방법

▪ 원산지의 표시기준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과 같고, 원산지의 표시방법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와 같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호).

> **※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 방법**
>
> Q. 저희 음식점에서는 칼국수를 판매하면서 배추김치를 직접 담가 손님들에게 함께 제공하고 있는데요. 배추가 국내산이면, 배추김치에 대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할 수 있는 건가요? 고춧가루를 사용한 경우에 그 원산지도 표시해야 하나요?
>
> A. 국내에서 배추김치를 조리하여 만들어 제공하는 경우에는 “배추김치”로 표시하고, 그 옆에 괄호로

배추김치의 원료인 배추(절인 배추를 포함)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해요. 고춧가루를 사용한 배추김치의 경우에는 고춧가루의 원산지도 함께 표시해야 하고요. 그리고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않은 배추김치는 배추에 대한 원산지만 표시하면 돼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예시)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

배추김치(배추 중국산, 고춧가루 국내산)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않은 배추김치: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 만약 외국에서 제조·가공한 배추김치를 수입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에는 배추김치를 제조·가공한 해당 국가명을 표시해야 해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예시) 배추김치(중국산)

※ 배달앱 등을 통해 음식을 판매하는 경우 유의사항

2026년 10월 22일부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점업체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달앱 등을 통해 음식을 판매하는 영업자는 플랫폼에서 안내하는 원산지 표시제도 관련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그 밖에 원산지 표시 대상 및 방법에 대한 내용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의 금지

혼동 또는 위장표시 등의 금지

▪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판매·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여 보관·진열하는 행위
-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판매·제공하는 행위

▪ 「방송법」에 따라 승인을 받고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해당 방송채널 등에 물건 판매중개를 의뢰하는 사업자가 위의 행위를 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 ※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위반 시 제재

▪ 혼동 또는 위장표시 금지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 위에 해당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혼동 또는 위장표시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해당 방송채널 등에 물건 판매중개를 의뢰한 자가 혼동 또는 위장표시 행위를 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3호의2).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의 비치·보관 의무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 등의 비치

▪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발급받은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매입일부터 6개월간 비치·보관해야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5호).

> ※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 안내전단>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 홈페이지(http://www.naq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점포 관리

3.1. 시설 관리 시 준수사항

3.1.1. 소방안전 등에 관한 관리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가입 대상

▪ 다음의 영업(이하 “다중이용업”이라 함. 다만, 영업을 옥외 시설 또는 옥외 장소에서 하는 경우 그 영업은 제외함)을 하는 음식점은 화재(폭발을 포함)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함)에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하 “화재배상책임보험”이라 함)에 가입해야 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 제13조의2제1항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1.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함)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합니다.

2.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

※ 특수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 화재보험

Q. 특수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요?

A.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돼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

이때, “특수건물”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를 영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을 말합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0호).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에 따른 **공유주방 운영업**

이와 같은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서 그 건물을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이하 “특약부화재보험”이라 함)에 가입해야 해요(「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본문).

다만, 종업원에 대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어요(「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

위반 시 제재

▪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음식점 영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제6호의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안전시설 등의 설치 및 신고

▪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안전시설 등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설치·유지해야 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전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다중이용업을 하고 있는 자를 포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

-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영업장 면적의 증가
  - √ 영업장의 구획된 실의 증가
  - √ 내부통로 구조의 변경
- 안전시설 등의 공사를 마친 경우

▪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유지하는 안전시설등 중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지하층인 경우는 제외)인 경우 그 영업장에 설치하는 비상구에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등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제2호다목의 기준에 따라 갖추어야 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 이를 위반하여 비상구에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기준에 따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제2호의3).

※ 종전에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등을 한 다중이용업주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한 다중이용업주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비상구에 갖추어야 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법률 제15299호, 2017. 12.

> 26.> 제2조).

실내장식물의 설치

▪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실내장식물(반자돌림대 등의 너비가 1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은 불연재료(不燃材料)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해야 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 ※ “실내장식물”이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계산대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
> 1.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함)·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 2. 합판이나 목재
> 3. 공간을 구획하기 위해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않는 벽체를 말함)
> 4. 흡음(吸音)이나 방음(防音)을 위해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다중이용업주는 해당 영업장에 설치된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과 「건축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유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위반 시 제재

▪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

소방시설 등의 설치 등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식점(이하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의 영업자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하 "장애인 등"이라 함)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함)은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제12조제1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1조, 별표 2 제2호나목, 제14호가목·나목 및 별표 4).

▹ 근린생활시설

√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단란주점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 위락시설

  √ 단란주점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유흥주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관리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건축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함)에 대해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소방기본법」 제16조)을 하는 데 지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소방대상물의 방염

▪ 다중이용업소에 사용하는 실내장식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실내장식물을 말함)과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을 포함)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제9호).

-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를 포함)
- 카펫
- 벽지류(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종이벽지는 제외)
- 전시용 합판·목재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목재 또는 섬유판(합판·목재류의 경우 불가피하게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것 포함)
- 암막·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
-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

> ※ 소방안전 및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소방안전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1.2. 금연구역의 지정

금연구역의 지정

금연구역 지정 대상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및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이하 “음식점”이라 함)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24호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

금연구역의 표지 설치

▪ 음식점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금역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후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본문 및 별표 2 제1호).

▸ 표지 부착

1) 음식점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해야 합니다.

2) 금연구역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된 장소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합니다.

3) 해당 시설의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에 부착해야 하며, 그 외 계단 및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부착합니다.

4) 금연구역의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구역을 이용하는 일반 공중이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담장, 벽면, 보도(步道) 등에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합니다.

5)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작하여 부착해야 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 표지 내용

1) 다음에 따른 표지판 또는 스티커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예시)



금 연 건 물	<건물>
금 연 시 설	<시설>
금 연	<그 밖의 경우>

√ 위반 시 조치사항

(예시) : 이 건물 또는 시설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해야 합니다.

3)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4) 필요한 경우 표지판 또는 스티커 하단에 아래 사항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시)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전화번호 OOO-OOOO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반 시 제재

▪ 음식점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9항제1호).

▪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1항제2호).

흡연실의 설치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실 설치

▪ 음식점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음식점에 흡연자를 위해 다음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후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및 별표 2 제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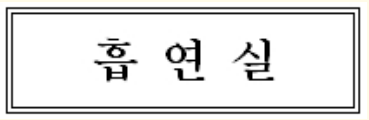
▸ 흡연실의 설치 위치

√ 음식점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가급적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흡연실의 표지 부착

1)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라는 표시와 함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아래 예시와 같이 흡연실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해야 합니다.

(예시)



2) 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해야 합니다.

3)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4)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흡연이 가능한 영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 경계를 표시하거나,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해야 합니다.

▹ 흡연실의 설치 방법

1)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으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의 공간을 흡연실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건물 내 흡연실에는 흡연실의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4) 흡연실에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개인용 컴퓨터 또는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3.2. 임대차계약의 관리

3.2.1. 임대차계약의 갱신

임대차계약의 갱신

합의의 갱신

▪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기간의 만료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존속시키도록 하는 합의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묵시의 갱신

▪ "묵시의 갱신"이란 임대차기간이 만료됨에도 당사자 사이에 계약해지에 관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임대차관계를 존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4항 전단).

▹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4항 후단).

※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한 묵시의 갱신은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단서).

※ 「민법」 상 계약의 갱신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은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639조제1항 본문).

> 전임대차에 대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해 소멸합니다(「민법」 제639조제2항).

계약갱신의 요구

계약의 갱신

▪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본문).

계약 갱신의 거절

▪ 임대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단서).

-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 임대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 √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 √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갱신의 범위

▪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2항).

갱신된 임대차의 조건

▪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3항 본문).

▪ 다만, 차임 또는 보증금은 증감할 수 있으며, 증액의 경우에는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3항 단서, 제11조제1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2. 임대차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의 종료 사유

임대차계약 기간의 만료

▪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35조제1항 및 제636조).

임대차계약의 중도 해지

▪ 임차인은 다음의 경우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민법」 제625조)

▹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민법」 제627조)

▪ 임대인은 다음의 경우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민법」 제629조제2항)

▹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 **※ 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
> √ 임차인이 2020. 9. 29. 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제1호, 제10조의4제1항 단서 및 제10조의8의 적용에 있어서는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체한 차임액에 대한 임대인의 그 밖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

임대차계약 종료의 효력

임대차관계의 소멸 및 손해배상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임대차관계는 장래를 향해 그 효력이 소멸됩니다(「민법」 제550조).

▪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1조).

▹ 다만, 임차인의 파산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는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37조).

임대물건의 반환 및 임차보증금의 회수

▪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을 반환할 의무 등을 지게 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 따라서 임차인은 차임지급의무를 지는 한편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상가건물의 인도를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게 되고(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전원합의체 판결), 임대인은 차임지급청구권을 가지는 한편 임차상가건물을 인도받을 때까지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게 됩니다.

권리금의 회수

권리금이란?

▪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1항).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

▪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1항 및 제2항).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

▪ 임대인이 위의 권리금 회수 금지 행위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3항 전단).

▹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3항 후단).

▪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4항).

> ※ 임대차계약의 종료 및 권리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종업원 관리

4.1. 종업원 채용

4.1.1. 근로 계약 및 채용

근로계약의 체결

근로계약이란?

▪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

근로계약서 작성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 임금
- 소정근로시간
-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 연차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근로기준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청소년의 채용

청소년 채용의 나이 제한

▪ 15세 미만인 사람(「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함)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본문).

-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본문).

청소년의 근무시간

▪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69조 본문).

-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9조 단서).

야간·휴일근로의 제한

▪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본문).

- 다만, 18세 미만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단서).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 ※ 청소년 근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근로청소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근무 여건

최저임금의 보장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 ※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최저임금액은 10,320원입니다(「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임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의 보장

▪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근로 후 휴일의 보장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일요일은 제외)에 따른 공휴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

  ▹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유급휴일을 받을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사용자는 연장근로(「근로기준법」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 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의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제1항).

퇴직금의 지급

퇴직금제도의 설정

▪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퇴직금 지급 대상

▪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 또한, 퇴직금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퇴직금 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본문).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제1호).

> ※ 퇴직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퇴직급여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외국인 근로자 채용**
>
> Q. 요즘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저희 음식점에서 일할 종업원으로 중국동포를 뽑으려고 알아보고 있어요. 혹시, 필요한 절차가 있나요?
>
> A.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려면 우선, 고용지원센터에 내국인 근로자 구인신청을 하고, 7일 이상 내국인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해요(「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제2호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제2호).
>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만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채용할 근로자를 선정하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고(「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해요(「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이처럼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도 내국인근로자와 동등하게 대우하고 국내법에 따라 권익을 보호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 꼭 명심하세요~!

※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외국인근로자 취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1.2. 4대보험 가입

국민연금의 가입

가입 대상

▪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음식점(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함)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국민연금법」 제8조제1항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봅니다(「국민연금법」 제8조제2항 본문).

▹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8조제2항 단서).

자격 취득 및 상실 등 신고

▪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는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 사실, 사업장의 내용 변경 및 휴업·폐업 등에 관한 사항과 가입자 자격의 취득·상실, 가입자의 소득월액 등에 관한 사항을 당연적용사업장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21조제1항 및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국민건강보험의 가입

가입 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모두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되며,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109조제2항).

▹ 국민건강보험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1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4. 근로자가 없거나 위 2.에 해당하는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위의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가입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

따라서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자격변동 신고

▪ 직장가입자의 사용자는 지역가입자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 사용된 날 또는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등 그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2항).

> ※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가입

가입 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으며, 이에 따른 사업주와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함)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고용보험법」 제8조제1항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고용보험법」 제5장의2 또는 제5장의3에서 규정된 사항에 한정하여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고용보험법」 제8조제2항).

자격 취득 및 상실 등 신고

▪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15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
> Q.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저 혼자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저 같은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
> A. 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18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본인을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
>
> 이처럼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나중에 음식점을 폐업하게 되는 경우, 수급자격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가입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않는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보험관계의 성립

▪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

>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산업재해보상보험 I (업무상 재해)』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II (보험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2. 종업원의 위생 관리

4.2.1. 건강진단

건강진단의 실시

건강진단 대상자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본문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본문).

▹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단서).

건강진단 시기

▪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종업원은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건강검진의 항목 및 횟수

▪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진단항목 및 횟수는 다음과 같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

대 상	건강진단 항목	횟 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제외)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사람(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	1. 장티푸스 2. 파라티푸스 3. 폐결핵	1회/년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식품위생법」 제101조제3항제1호).

질병인정 시 영업 종사의 제한

영업 종사의 제한

▪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 영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식품위생법」 제40조제2항).

▪ 또한, 영업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거나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합니다(「식품위생법」 제40조제3항).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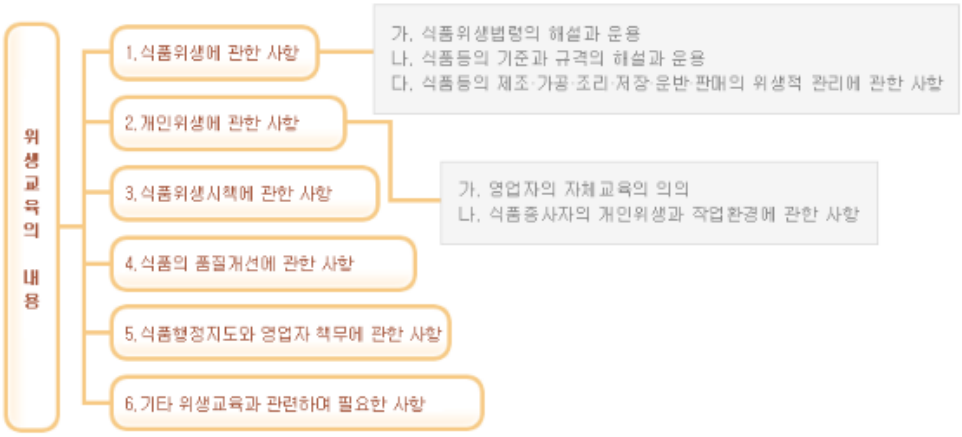
▪ 건강진단 결과 다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은 영업에 종사하지 못합니다(「식품위생법」 제40조제4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0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化膿性)질환
-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함)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않거나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식품위생법」 제101조제3항제1호).

4.2.2. 식품위생교육



식품위생교육의 수료

식품위생교육 대상자

▪ 음식점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음식점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식품위생교육의 대리

▪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제3항 본문).

▹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함)가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되어 「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제3항 단서).

식품위생교육의 면제

▪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4항).

▹ 해당 연도에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기존 영업의 영업소가 속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서 교육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 해당 연도에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기존 영업의 영업소가 속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중에서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①에서 ①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또는 ②에서 ②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③에서 ③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④에서 ④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①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②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및 기타 식품판매업

③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④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해당 연도에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다음 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에서 다음 ②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그 업종을 함께하려는 경우

①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② 식품운반업(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함),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

▪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식품위생법」 제41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위생관리책임자가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5항).

식품위생교육의 실시

식품위생교육 시간

▪ 영업자 및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제1호·제2호).

- 영업자 : 3시간
- 유흥주점영업의 유흥종사자 : 2시간

식품위생교육 기관

▪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다음의 기관에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제6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및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

교육대상	교육기관
휴게음식점영업자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영업신고 후 영업하는 회원에 한함)
일반음식점영업자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영업신고 후 영업하는 회원에 한함)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영업신고 후 영업하는 회원에 한함)
단란주점영업자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유흥주점영업자 및 유흥종사자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위탁급식영업의 영업자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위탁급식영업자 중 영업신고 후 영업하는 회원에 한함)
제과점영업자	(사)대한제과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영업신고 후 영업하는 회원에 한함)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식품위생법」

제101조제4항제1호).

5. 세금 납부 등

5.1. 세금의 납부 등

5.1.1. 부가가치세의 납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

▪ 사업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항).

과세 대상

▪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해 과세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기간

▪ 음식점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 간이과세자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일반과세자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게 되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거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해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의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
>
> 1.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2.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업 개시 및 폐업 시 과세기간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

▪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 전단).

-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며,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 후단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

간이과세자 포기 시 과세기간

▪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되는 경우 다음의 기간을 각각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

▹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간이과세의 적용 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

▹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 간이과세의 적용 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 간이과세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음식점 창업』 <사업의 등록-사업자등록-사업자 유형의 결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납부세액

▪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함)에서 매입세액,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2항).

▪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최종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3항).

```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 = A - B + C
 A: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B: 제46조, 제47조 및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공제세액
 C: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

신고 및 납부

▪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의 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개인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 해 1.1.~1.25.	법인·개인사업자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국세신고안내-부가가치세-기본정보-부가가치세 개요>

▪ 사업자는 납부세액(해당 예정신고기간에 대해 수시부과한 세액은 공제함)을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때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대리점 포함) 또는 체신관서(이하 "한국은행 등"이라 함)에 납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2항).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과세표준 X 부가가치율 15% X 10%) – 공제세액]의 금액으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2항, 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

신고 및 납부

▪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를 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한국은행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7조제1항).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면제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9조제1항).

> ※ **유흥주점과 개별소비세**
>
>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 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며(「개별소비세법」 제1조제1항),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대해 그곳에서 제공되는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이 부과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
>
>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 매월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별로 인원·유흥음식요금 산출세액·면제세액·공제세액·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유흥음식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유흥장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개별소비세법」 제9조제5항).

> ※ 그 밖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국세신고안내-부가가치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1.2. 종합소득세의 납부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

▪ 소득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함)의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 본문).

▪ 종합소득세는 거주자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한 것에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

과세기간

▪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제5조제1항).

장부의 비치 및 기장

복식부기의무자

▪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간편장부대상 이외의 모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소득세법」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제1항).

-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1항).

간편장부대상자

▪ 다음의 사업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9항에 따른 간편장부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아도 됩니다(「소득세법」 제160조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1호 및 제2호나목).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음식점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음식점 사업자

▪ "간편장부"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9항).

-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참고사항

> ※ 간편장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간편장부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

▪ 사업자는 장부에 따라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결손이 발생한 경우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45조제1항 참조).

- "결손금"은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19조제2항).

▪ 사업자가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소득세법」 제160조)를 비치·기록하지 않았거나 비치·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해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5제1항).

$$\text{가산세} = A \times \frac{B}{C} \times \text{100분의 20}$$

A: 종합소득산출세액

B: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

C: 종합소득금액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함)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사업자의 소득금액

▪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필요경비)의 금액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제19조제2항).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

▪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는 다음 중 작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

1. 소득금액 = 수입금액-필요경비-(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2. 소득금액 = {수입금액-(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X 배율[간편장부대상자 : 2.8, 복식부기의무자 : 3.4]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수입금액-(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의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수입금액에서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은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의2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의2).

>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1호, 제2호나목 및 제208조제5항제2호나목).
>
>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음식점 사업자
>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천600만원에 미달하는 음식점 사업자
>
>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의 적용 대상이 아닌 자를 말합니다.

납부세액

▪ 사업자의 종합소득 납부세액은 {(과세표준 = 소득금액-소득공제) X 세율}의 금액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2항 및 제55조제1항).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84만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5천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624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천536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천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천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7천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42%)
10억원 초과	3억8천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신고 및 납부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제1항 및 제3항).

▪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6조제1항).

> ※ 그 밖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성실 신고지원-종합소득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1.3. 현금영수증의 발급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가입대상

▪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식점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항제1호·제4호, 별표 3의3 및 제4항).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해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 이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 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을 하는 사업자

▪ 위 1.을 적용하는 경우 음식점(소비자상대업종)과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음식점의

수입금액만으로 하고, 음식점(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2항).

▪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해당 사업월수(1개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로 함)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3항).

> **※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
> Q. 올해 분식집을 창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분식집도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
> A.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는 음식점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이어야 해요(「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항제1호 참조). 즉,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알 수 없는 사업의 첫 해이거나, 수입금액이 2천40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아도 돼요.
>
> 따라서 올해 분식집을 운영하는 첫 해라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의 표시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음식점 영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다음의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제2항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국세청 고시 제2024-13호, 2024. 5. 14. 발령·시행) 제2조].

- 계산대가 있는 사업장 :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의 벽·천정(천정걸이 사용)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 계산대가 없는 사업장 : 사업장 출입문 입구나 내부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제2조 및 별표).

구 분	규 격	포함될 문구
의무발행 가맹점	가로160㎜ × 세로100㎜ ± 30%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일반 가맹점	가로125㎜ × 세로100㎜ ± 30%	현금영수증가맹점

- ´의무발행 가맹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별표 3의3에 따른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가맹점을 의미하며, 의무발행 가맹점 외의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일반가맹점´에 해당합니다.

위반 시 제재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할 사업자가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9제2항제1호).

$$\text{가산세} = A \times \frac{B}{C} \times \text{100분의 1}$$

A: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업종의 수입금액만 해당하며,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은 제외한다)

B: 미가입기간(제162조의3제1항에 따른 가입기한의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미가입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가입기간을 적용한다)

C: 365(윤년에는 366으로 한다)

현금영수증의 발급

발급대상

▪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은 건당 1원 이상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6항).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3항 본문).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금지행위

▪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이외에 어떠한 명목의 추가요금을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제3조).

▪ 현금영수증가맹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제4조).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초과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 다른 현금영수증가맹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정당한 사유 또는 소비자의 동의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하는 행위
- 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거래상대방이 아닌 타인에게 교부하는 행위
- 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 취소하고 거래상대방이 아닌 타인에게 재발급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9제2항제2호 및 제162조의3제3항).

- 해당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해서 통보받은 건별 발급 거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해야 할 금액과의 차액)의 각각 5%에 해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천원으로 함)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탈퇴

탈퇴 사유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된 사업자는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에 미달하게 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5항 전단).

- 이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5항 후단).

6. 영업의 변경 및 폐업 등

6.1. 영업 사항의 변경

6.1.1.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

※ **업종별 영업신고 및 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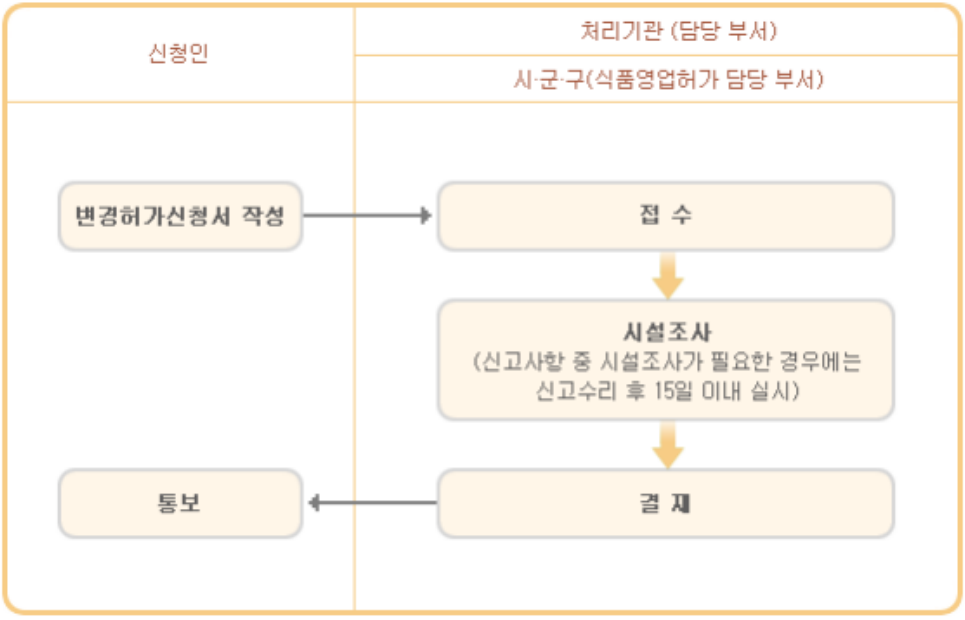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제2호).

※ "영업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음식점 창업』 <영업신고 및 허가 등-영업신고 및 영업허가-영업신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영업허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음식점 창업』 <영업신고 및 허가 등-영업신고 및 영업허가-영업허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허가사항의 변경



변경허가의 대상

▪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자**가 영업 중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후단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4조).

변경허가의 신청

▪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자가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에 대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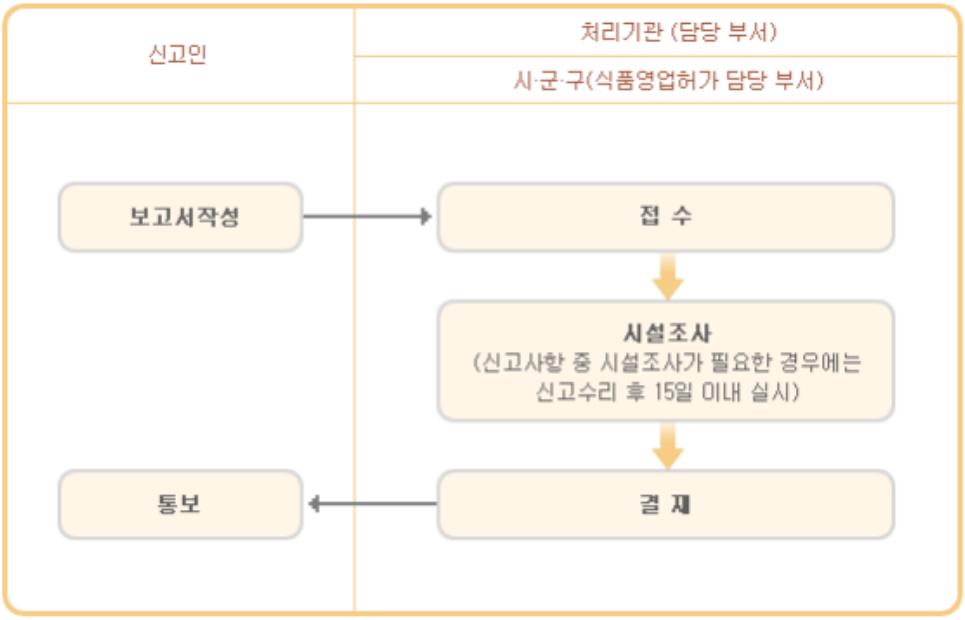
- 변경허가신청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위반 시 제재

▪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94조제1항제3호).

※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변경허가를 받지않은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집니다(「식품위생법」 제94조제2항).

경미한 허가사항의 변경



변경신고의 대상

▪ 영업의 허가를 받은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영업소재지 변경을 제외한 아래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3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

- 영업자의 성명(영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함)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영업장의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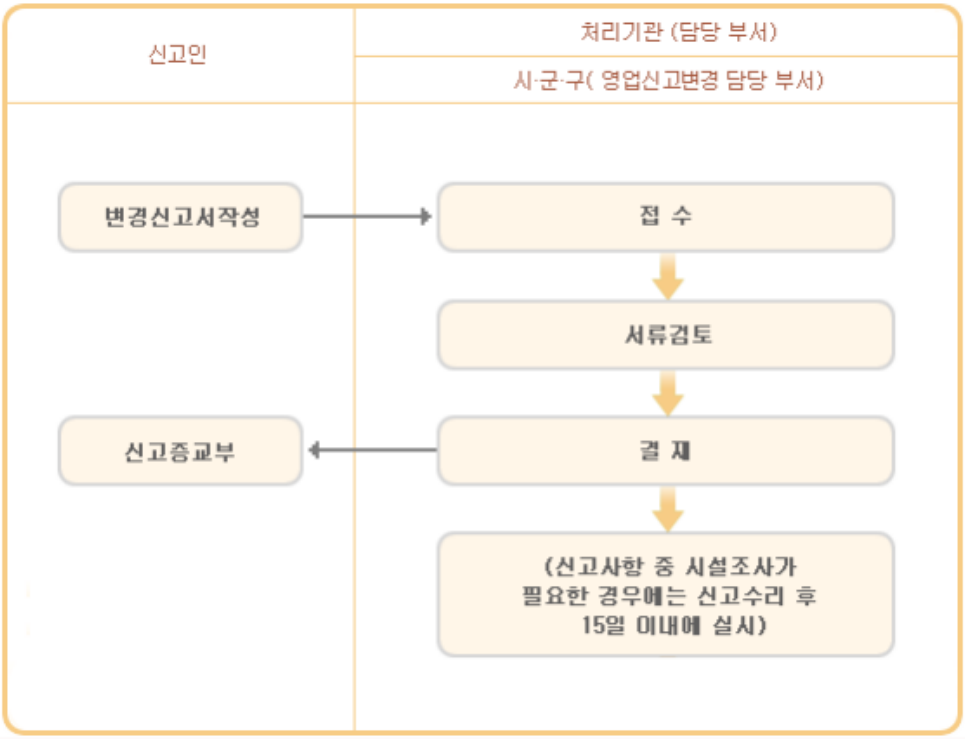
변경신고의 신청

▪ 영업허가를 받은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자가 위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사항 변경 신청·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

위반 시 제재

▪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

중요한 신고사항의 변경



변경신고의 대상

▪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위탁급식·제과점영업자**가 신고한 사항 중 아래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후단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

-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함)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영업장의 소재지
- 영업장의 면적

변경신고의 신청

▪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에 아래 구분에 따른 각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1.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3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서류
2. 건물 외부에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용하려는

장소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 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가공하려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변경 전 식품의 유형 또는 변경하려는 식품의 유형이 자가품질검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

위반 시 제재

▪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

6.1.2.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및 말소 등

사업자등록의 변경

변경신고

▪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3조).

1.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소득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1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한 경우

√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경우

4. 사업장[「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함)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함]을 이전하는 경우
5.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7.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 및 그 면적, 보증금, 임차료 또는 임대차기간이 변경되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함)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9.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10.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11. 사이버몰[「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함)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함]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제출

▪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전단 및 제14조제1항).

▪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 호의 구분란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된 사업자는 해당 각 호의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후단).

▪ 사업장과 주소지가 동일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서 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가 변경되면 사업장의 주소도 변경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사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한 이내에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1. 위 변경신고의 1. 및 11.의 경우: 신고일 당일
2. 위 변경신고의 2.부터 10.까지의 경우: 신고일부터 2일 이내

▪ 사업자가 위 변경신고의 4. 또는 8.에 따른 사유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종전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사업장의 이전 또는 변경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사업자 등록의 말소

등록 말소의 사유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9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 폐업(사실상 폐업한 경우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한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②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③ 사업자가 인가·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

④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⑤ 그 밖에 사업자가 위 ①부터 ④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회수

▪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회수해야 하며, 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사실을 공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사업자등록의 갱신

사업자등록의 갱신 발급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0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6.2. 휴업 및 폐업

6.2.1. 휴업신고

「식품위생법」 상 휴업 시 행정처분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5조제3항제1호).

「부가가치세법」 상 휴업신고

휴업신고

▪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을 하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될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휴업신고를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휴업신고서 제출

▪ 휴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 사업자의 인적사항
- 휴업 연월일과 그 사유
- 그 밖의 참고 사항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의 휴업신고

▪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휴업(폐업)신고서를 받은 주무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서류를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해야 하고,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해당 법령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서류를 관할 주무관청에 송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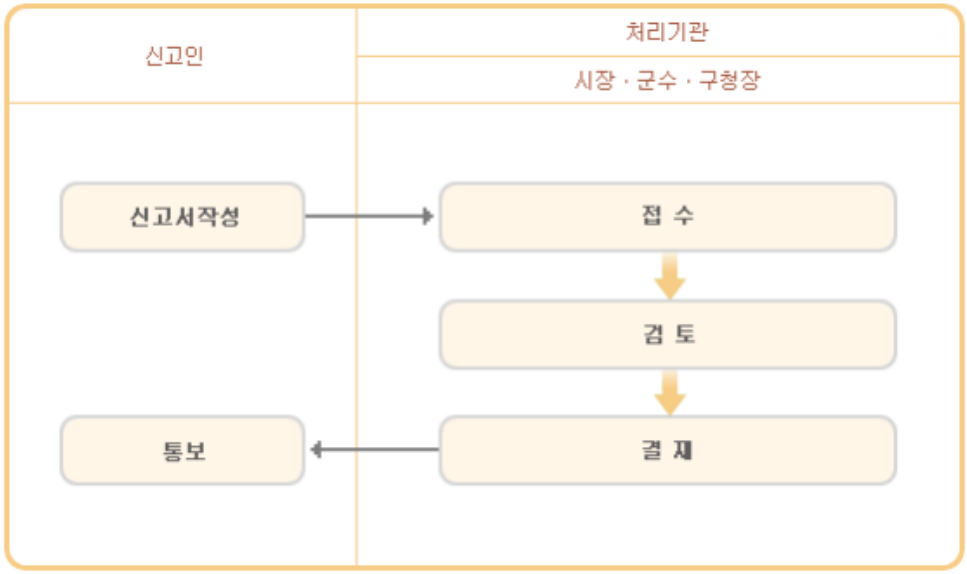
휴업신고의 효력

▪ 휴업하는 날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업신고서의 접수일)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6항).

▪ 휴업신고서에 적힌 휴업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계절적인 사업의 경우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은 휴업기간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7항).

6.2.2. 폐업신고

「식품위생법」 상 폐업신고



폐업신고

▪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3항 및 제4항 후단).

폐업신고서 제출

▪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업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 폐업신고를 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위의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폐업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전단).

영업신고의 말소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위반 시 제재

▪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

폐업신고

▪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을 하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될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폐업신고서 제출

▪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 사업자의 인적사항
-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 그 밖의 참고 사항

▪ 폐업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 폐업을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Q.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지만, 장사가 너무 안 돼서 그만 정리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영업신고를 한 것에 대해서 폐업신고만 하면 되나요?

A. 음식점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관청에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를 해야 하고(「식품위생법」 제37조제3항 및 제4항 후단), 이와 함께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도 세무서에 해야 해요(「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그리고 폐업을 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1항).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의 폐업신고

▪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휴업(폐업)신고서를 받은 주무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서류를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해야 하고,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해당 법령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서류를 관할 주무관청에 송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폐업신고의 효력

▪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 전단).

▪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 후단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

▪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본문).

※ 음식점의 양도 및 상속

Q. 아버지가 운영하던 음식점을 제가 물려받아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폐업신고를 하고 다시 새롭게 영업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음식점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하면 돼요. 하지만 기존에 운영 중인 음식점을 양도받거나 영업자가 사망하여 이를 상속받게 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고 음식점을 운영하면 돼요(「식품위생법」 제39조제1항 및 제3항).

※ 음식점의 영업자 지위 승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음식점 창업』 <영업신고 및 허가 등-영업 승계-영업자 지위의 승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